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진 공정거래제도

- 2020년 4/4분기 -

2021. 2.

공정거래위원회

목 차

I . 공정거래법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II. 방문판매·약관규제법 등	5
2.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3.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분야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4.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III. 하도급법	10
5. 하도급 금형 모범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지침 마련	
6.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7. 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IV. 가맹사업법·대리점법	15
8.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마련	
9. 6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 제정	
10.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3)

**공정경제와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배경] 공정위는 공정경제·혁신 성장을 위해 2018년 8월 공정거래법 전반을
쇄신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전부 개정안 중 일부 절차 법제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
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5월 말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공정
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법 집행 체계 개편,
기업집단법제 개선, 혁신 성장 촉진 관련 주요 과제들이 지난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 6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재추진하였고, 마침내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시행,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 시행)

〈주요 개정사항〉

-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행위 억제와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기업의 부담 완화와 혁신을 지원 내용들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개정 내용
①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① 사의 편취 규율 대상 확대 ②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③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④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②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편	①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②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③ 과징금 부과 수준 상향 ④ 형벌 규정 정비
③ 혁신성장 촉진	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② 벤처 지주회사 규제 완화 ③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 기준 도입 ④ 정보 교환 담합 행위 규율

①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 ① 사의 편취 규율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비상장인 경우 20% 이상)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지원을 받는 계열사로서의 규율 대상을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하여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 이에 따라 규율 대상 회사는 현행 210개에서 598개(‘20.5.1.기준)로 388개가 증가됩니다.

②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이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편입하는 경우,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경우 모두 10%p씩 상향하였습니다.
- 상장사인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사인 경우 40%에서 50%로 높여 총수 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부작용이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③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다만, 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④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 현재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등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결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 개정법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사유 중, 적대적 인수합병과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 양도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금융보험사가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앴습니다.

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 개정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기업집단이 지정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순환출자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통보되는 경우부터 적용

-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된 회사가 새롭게 순환출자를 만드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가공 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을 규율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②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①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공정위 신고 후 조치를 기다려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②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 공정위가 제재 조치를 완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액 사건 피해구제를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가 구제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③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여, 담합은 관련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 거래 행위는 2%에서 4%로 높임으로써 법위반 억지력을 강화하였습니다.

④ 형별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반면, 형별 부과 필요성이 낮고 그간 형별 부과 사례도 없는 기업결합,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행위는 과징금 등 행정벌로 제재됩니다.

③ 혁신 성장 촉진

①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제한적 보유를 허용합니다.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 타인 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지주회사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100%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 비율 제한(200%), 펀드 내 외부 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② 벤처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벤처 지주회사 설립 요건 및 행위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보다 자유로운 벤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벤처 지주회사를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비상장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40%에서 20%로 완화하였고(상장 자회사는 20% 유지),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상장·비상장 자회사 모두 지분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5% 한도 내에서만 비계열사 주식을 취득토록 하는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③ 거래금액을 기반으로한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 현재는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 대기업이 소규모이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인수하는 등 향후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이 심사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정법은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 원)에 미달 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폐해 발생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④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규율합니다.

- 개정법은 가격·생산량 등 경쟁제한적인 정보 교환 행위도 규율될 수 있도록 금지행위 유형에 이 행위를 포함시키고, 가격의 공동인상 등 외형상 일치와 정보 교환이 확인되는 경우 법률상 합의가 추정되도록 하였습니다.
- * 법원은 다수 사건에서 가격 정보 교환에 대해 경쟁제한적 행위라고 보면서도,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기타

-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 하였으며,
- 피조사업체에 대해 진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진술 조서를 작성토록 의무화 하는 등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강화해주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전부개정)

☞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9.)를 검색 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과 사의 추구 행위 등이 억제되고,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지며, 기업들의 혁신 성장도 촉진되어 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II

방문판매 · 약관규제법 등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044-200-4438)

방문 판매업자 민원 편리 제고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 [개정배경] 공정위는 신고증 등을 분실·훼손한 방문 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증 등을 재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 사항과 침해 정지 요청 방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2.4부터 시행합니다.

〈주요개정 사항〉

가. 방문 판매업자 등의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 방문 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 시 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신고증 제출 의무를 갈음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다단계 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 시 등록증의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등록증 제출 의무를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위법 다단계 피해 침해 정지 요청 방식의 전자화

- 위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침해 정지 요청을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련규정 **방문판매법 시행령(개정)**

☞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4.) 을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판매업자 등 사업자의 민원 처리는 보다 편리해지고,
소비자의 피해 구제 수단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분야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약관심사과(☎ 044-200-4411, 4455)

**민원 급등 4개 분야에 대하여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해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둘겠습니다.**

■ [개정배경]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 서비스업(연회 시설 운영업) 등 4개 분야의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개정 사항〉

가.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 가족 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정부의 행정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의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 (항공·숙박) 항공·숙박 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 (여행)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해외] 여행·항공업

- 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조치, 외교부의 여행 경보 등에 따른 계약 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 (항공) 항공 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 (여행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외식 서비스(연회 시설 운영업)

- 영유아 · 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돌잔치 · 회갑연 등]가 대부분이고, 일정한 장소에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연회 시설 · 지역에 시설 폐쇄 ·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회 시설에 집합 제한 · 운영 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 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 행사 일시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위약금 40% 감경) 집합 제한·시설 운영 제한 등 행정 명령 발령으로 계약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 * (위약금 20% 감경)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관련규정] 여행 · 항공 · 숙박 · 외식업 분야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11.12.)을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과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044-200-4457)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환불 관련 표준약관을
개선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였습니다.**

- [개정배경] 공정위는 스마트폰 사용 보편화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 증가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의 사용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신유형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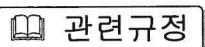
〈주요개정 사항〉

[표준약관 개정 주요내용]

- ① 사용방법에 따라 상품권이 구분되도록 정의 규정 명확화(제2조)
- ②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범위 명확화(제3조)
- ③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 발행시 환불사항 표시 의무화(제4조)
- ④ 신유형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제5조)
- ⑤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도래 관련 통지의무 강화(제5조)
- ⑥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명시(제6조)

- 가.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유형 상품권의 정의 규정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 상품권의 구분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상품권의 명칭과 상관없이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또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으로 구분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질이 금액형 상품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제품권」, 「교환권」으로 하여 마치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잔액 환불 등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오인의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표준약관의 적용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표준약관에 규정된 예시 문구로 인하여 모든 무상제공 상품권 및 예매권이 표준약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나.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 발행 시 환불사항 표시의무 신설, 신유형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 및 유효기간 도래 관련 통지의무 강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환불규정을 상품권 발행 시 표시사항의 하나로 추가 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반환이 가능함을 몰라 다른 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잔액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1년 이상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품질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유효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년 이상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품질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또는 용역인 경우에도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이를 별도로 연장하거나 경과로 인한 환급액의 손실을 겪어야 하는바, 유효기간을 금액형과 같이 1년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상품권 유효기간 도래 관련 통지 시점을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통지내용에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규정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하기 전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개정)**

☞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12.15.)을 검색 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이 해소되고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III

하도급법

하도급 금형 모범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9)

**금형 비용 정산 · 사전 통보 후 금형을 회수하도록 권장하여
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제정배경]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하여 금형 관리 및 비용을 정산할 때, 원·수급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균형 있게 제시하게 함으로써,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가. 금형 사용 · 관리 시 사전 협의 사항 및 비용 분담 기준 제시

- 수급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각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유지·보수 비용, 보관 비용 등 금형 관리 비용 부담 주체, 금형 비용 정산 방법 및 정산 기일 등을 사전에 서면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는 금형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 금형의 품명, 수량
- 사용료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기일(원사업자 소유 금형을 대여한 경우)
- 금형을 통해 제조할 제품의 생산 수량과 생산 기간
- 생산 기간 중 금형 비용(유지·보수 비용, 보관 비용, 재제작 비용 등) 부담 주체
- 금형 비용 정산 방법과 정산 기일

- 아울러, 금형을 사용·관리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로 원·수급 사업자 간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 금형 회수 · 반환 절차 및 준수 사항 제시

- 원사업자의 금형 회수에 대한 수급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원사업자가 회수 시점·회수 방법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계약 해제·해지 후 즉시 회수 시점 등을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 아울러,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원사업자는 해제·해지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 계약 유예 기간을 두어 회수 시점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원·수급 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에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기타 준수 사항 제시

- 이외에도 금형 제작 시 소유권 귀속 주체, 수급 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 금형 사용·관리 단계에서의 기타 준수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수급 사업자가 완성품 생산을 위해 금형을 개발·제작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 개발·제작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금형에 대한 상각이 완료된 경우 금형 및 금형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한편, 수급 사업자가 완성품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여 금형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위 금형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수급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관련규정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제정)**

☞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 제정 (10.22)'을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원·수급 사업자에게 금형 비용 정산, 금형 회수·반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공정하고 상호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하여
분쟁 발생 소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5)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와 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하겠습니다.

■ [개정배경]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등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루어진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 20.12.1부터 시행합니다.

〈주요내용〉

가.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합니다.
 -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①행위유형 ②피해정도 및 규모 ③부당성만 고려하여 평가하고,
 -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 지표 대신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부당성만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피해정도 및 규모 ④부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요소 및 반영비중 >

구분	행위유형	피해발생범위	피해정도규모	부당성
기술유용기술자료요구·보복조치·탈법행위	40%	X	20%	40%
원사업자의 작위의무 위반 ¹⁾	30%	30%	X	40%
그 외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 등 ²⁾	30%	20%	20%	30%

- 1) 서면발급 및 보존, 신용장 개설, 수령증명서 발급,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제공,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개시 의무 등
- 2) 부당대금결정, 위탁취소, 감액, 부당특약, 구매강제, 부당결제청구, 경제적 이익요구, 대물변제, 경영간섭 등

나.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은 최대 30%로 확대 됩니다.

< 과징금 감경사유 및 비율 >

개정 전		개정 후	
수급사업자의 <u>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u>	20% 이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거나 <u>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u>	30% 이내
수급사업자의 <u>피해액 중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u>	10% 이내	수급사업자의 피해액 중 50% 이상을 구제하였거나 <u>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u>	20% 이내

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라. 위반행위의 종대성 세부평가항목 정비

- 종대성 세부평가항목을 정비하여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대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 과징금 부과율 결정 시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 경영상황 악화정도 외에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 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피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규정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시행(개정)**

☞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시행 (12.2.)'을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갑을 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유용행위 등 악의적 행위와 장기간 이루어지는 법 위반행위 발생이 억지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 확대 등으로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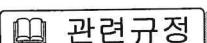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9)

**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 [개정배경] 공정위는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이 제정(20.10)됨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금형 사용 비중이 높은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에도 반영하여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 하였습니다.

< 주요 제·개정 내용 >

- ①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연 이자를 사전 합의하도록 규정(공통)
-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공통)
- ③ 원사업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승강기설치공사업종)
- ④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사후 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라 정산하도록 명시(방산업종)
- ⑤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업종)



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 '2020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12.16.)'을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간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V

가맹사업법 · 대리점법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 운영 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8)

**상생협력을 통한 자율적 분쟁조정 문화 확산을 위해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정 배경] 공정위는 가맹분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이 확산됨에 따라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 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기본원칙]

- 이 가이드라인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①상호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②기구설치 운영의 투명성, ③분쟁처리의 신속성, ④기구 구성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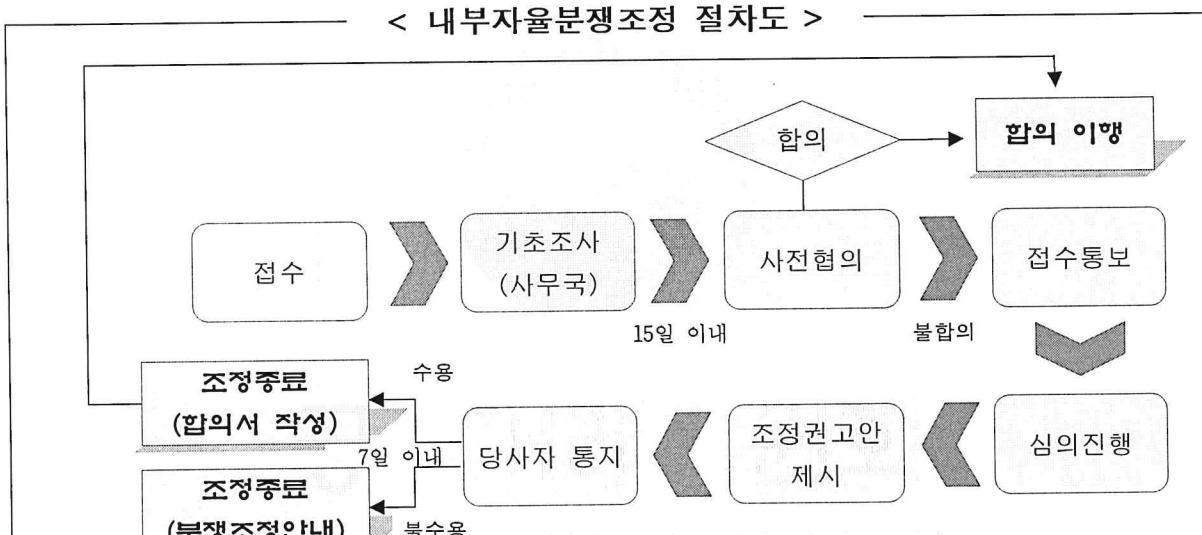
■ [기구의 구성과 운영]

-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분쟁조정기구의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및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의 위원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아닌 제3자로 하고, 가맹본부 대표위원(임원급 이상)과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동수로 합니다.
 - 위원장과 위원의 선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또는 단체) 간 상호 동의로 하되 임기는 2년 이하(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제척 · 기피를 인정하며 결원 시 대리인 선정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아울러, 사무국은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 [운영위원회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사전에 정한 주기에 따라, 수시회의는 급박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 [분쟁조정 대상 및 절차]

- [조정 대상] 가맹사업관련 법위반, 점주 개인사정 계약해지 · 손해배상, 계약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및 행정 분쟁을 포함합니다.

- [조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② 기초조사, ③ 사전협의, ④ 접수통지, ⑤ 심의진행, ⑥ 조정권고, ⑦ 통지 등 총 7단계로 규정되며, 분쟁조정 절차의 총 기간은 분쟁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사전에 정한 기간(쌍방동의 하에 연장 가능)으로 했습니다.
- [심의절차 등] 분쟁심의는 질의응답방식으로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위원들의 전원합의로 권고내용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 당사자는 권고안에 대해 사전에 정한 기간(7일) 내에 수용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가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 운영위원회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불수용하면 조정 불성립을 통보해야합니다.
- [분쟁조정 후 조치]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사무국은 이에 대해 이행을 점검할 의무를 부여했다.
-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일방이 소를 제기하거나 공적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 이를 운영위원회와 상대방에게 고지토록 했습니다.



< 참고 >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맹본부 내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한 분쟁 조정신청은 임의적 제도로 공적분쟁조정 신청과 별개로 가맹점주의 선택사항임. 따라서, 내부자율분쟁조정 신청은 공적분쟁조정에 우선하거나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조정절차 중에라도 언제든지 공적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관련규정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 조정 지침 (제정)**
 ☞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 조정 지침 제정(12.31.)'을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을 자율분쟁기구를 통해 해결하므로
브랜드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고 공적분쟁조정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6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044-200-4963)

**6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 제정을 통하여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 및 관행 확립을 유도하겠습니다.**

■ [제정배경] 공정위는 20년 7~8월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 거래 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 관행의 근절을 위한 가구, 도서 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6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통	▶ 일방적 수정 및 수정 요구 금지
	▶ 납품 불가·거절시 공급업자의 통지의무 및 대리점의 확인 요청권 부여
	▶ 대금 지급 수단 명시 및 지급 시기 합의 결정
	▶ 6%(상사 법정 이자율)로 규정 ▶ 코로나19 등 재난·위기에 따른 자연 이자 감면 규정 명시
	▶ 물적 담보 충분 시 인적 담보 추가 제공 금지 ▶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 부담 주체 명시(공급업자 전액 또는 분담)
	▶ 반품 사유 한정적 열거 ▶ 대리점의 반품 관련 협의 요청권 규정(가구·보일러)
	▶ 약정 기간 중 대리점에 불리한 변경 금지
	▶ 비용 분담 의무 규정
	▶ 대리점법상 8개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단체 구성권 보장 등 명시
	▶ (가구·가전) 3년 존속 기간 원칙적 보장 ▶ (도서 출판·보일러·석유유통·의료기기) 4년 존속 기간 원칙적 보장
	▶ 계약 만료 60일 이전 서면 통보(미통보 시 자동 갱신)
	▶ 즉시 해지 사유 한정적 열거 및 이외 사유 공급 중단 등 금지 ▶ 계약 해지 절차 규정(30일 이상 기간, 2회 이상 시정 요구, 서면) ▶ 공급업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시 환입 요청권 부여
가구	▶ 신규 출점 및 영업 지역 설정·변경시 사전 통지(협의) 의무 ▶ 영업 지역 침해 우려시 협의 요청권 명시(가구·보일러·가전)
	▶ 공급업자 지정 시공업체의 견적 가격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대리점의 시공업체 변경요청권 부여 ▶ 인테리어 재시공 요청시 비용분담비율 사전 명시
	▶ 공급 가격 조정요청권 규정(직영점 판매 가격이 더 낮을 경우)
	▶ 입점 대리점 선정, 수수료 산정 관련 차별 취급 등 금지

	입점	
도서 출판	소유권 유보	▶ 결제전까지 공급업자가 소유권 보유 ▶ 공급후 결제전까지 대리점의 선관주의 의무 명시
	판촉 활동	▶ 판촉 활동 요구시 대상내용 협의 및 비용 분담 의무(학교, 학원 등 대상)
보일러	A/S	▶ A/S 등 업무 위탁시 별도 약정서 작성 의무
	전속 거래	▶ 전속 거래 강요 금지
	상표 사용	▶ 상표 사용 및 제거 비용 협의 의무
가전	A/S	▶ A/S 등 업무 위탁시 별도 약정서 작성 의무
	전속거래	▶ 전속거래 강요 금지
	공급가격	▶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규정(온라인 쇼핑몰 등 직접 판매가격이 더 낮을 경우)
	인테리어	▶ 공급업자 지정 시공업체의 견적 가격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대리점의 시공업체 변경요청권 부여 ▶ 인테리어 재시공 요청시 비용분담비율 사전 명시
석유 유통	전속거래	▶ 전속거래 강요 금지
	대금정산	▶ 공급가격 산정기준 확인요청권 부여(발주 후 공급가격 변동시)
	지원조건	▶ 자금시설 지원 등 약정 관련 채무 원제시 해당 약정 해지 가능함을 명시
	상표사용	▶ 상표 사용 및 제거비용 협의 의무
의료 기기	A/S	▶ A/S 등 업무 위탁시 별도 약정서 작성 의무
	공급가격	▶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규정(직영점 판매가격이 더 낮을 경우)
	정보요구	▶ 거래처현황 · 판매가격 등 영업비밀 요구 금지
	리베이트	▶ 리베이트 제공 금지 ▶ 리베이트 제공 요구시 시정요구·계약해지 가능

 **관련규정 | 6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 (제정)**

☞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10.29.)',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제정 (12.30.)'을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대리점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와 상생 발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 신장과 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편의점 · 자동차정비 · 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 ·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8)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
제 · 개정을 통해 해당 가맹업종 거래분야에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개정배경]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 ·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업종 공통	영업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해지 용이
	▶ 개업초기 1년 간 가맹점주가 가맹사업 관련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의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 부담을 면제
	영업표지 변경 시 계약종료 선택권 부여
	▶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 선택권을 부여
	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
개별 업종	▶ 계약기간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갱신거절이 가능하도록 규정
	시설노후화 여부에 대한 가맹본부 입증책임 부여
	▶ 시설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시점을 명확하게 하고 점포환경 개선 필요여부에 대해 가맹본부가 입증토록 함
	가맹본부 보복금지조항 도입
	▶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공정위 조사협조 등 신의칙에 반한 일체의 보복행위를 금지
편 의 점 · 세 탁	영업지역 설정 기준 마련
	▶ 거리적 요소 외에 배후상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아파트지역, 비아파트지역으로 구분하고 배후세대수, 도로접근성, 거리, 상권 등을 종합 고려한 영업지역 설정 기준을 규정
	가맹점평가제도 규정
자동 차 정 비	지정장비의 설치와 부품 조달관리의 예외인정
	▶ 고객 클레임에 대한 대응과 가맹점 서비스 수준유지를 위한 평가제도, 평가항목, 제도협의 및 절차를 규정
	▶ 자동차정비서비스의 통일성과 표준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맹점에 장비부품 조달의 예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량을 부여

세 탁	<p>세탁물인수과정에서 하자발생 책임기준 마련</p> <p>지사의 설치와 업무대행의 근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물 변형이나 분실 등 세탁물의 인수과정에서 하자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 가맹본부별 지사의 세탁물 처리능력이 상이하므로 가맹 본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탁관련 역할분담을 수시로 조율하고 필요시 지사의 추가설치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	--	--

 **관련규정 3개 업종(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 3개 업종(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 표준가맹 계약서 제·개정(12.23.)'을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가 새롭게 제정되어
가맹점주의 권익이 높아지고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연락처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서울지방사무소 경쟁과 02-2110-6159
건설하도급과 02-2110-6151
제조하도급과 02-2110-6125

부산지방사무소 경쟁과 051-460-1023
하도급과 051-460-1045

대전지방사무소 경쟁과 042-481-8011
하도급과 042-481-8018

광주지방사무소 경쟁과 062-975-6821
하도급과 062-975-6845

대구지방사무소 (대표) 053-230-6300